『대구광역시 공유재산 의료기술시험연수원 부지』 사용료 면제 동의안

의 안 번 호 6694

제출일자 : 2023. 7.

제 출 자 : 대구광역시장

1. 제안이유

○ 의료기술시험연수원은 국가 보건의료자격 시험체계 고도화 및 국내외 보건의료인에 대한 교육훈련 환경 구축을 통한 우수한 보건의료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기관으로, 의료연구개발 및 의료산업 육성 발전을 위해 조성된 대구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 내 반드시 필요한 인프라임.

○ 이와 관련하여 「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」 제18조에 의거 건립 및 운영 사업자인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에 사용 허가하고,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의거 사용료를 면제하고자 대구광역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면제근거 :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나. 대 상

O 구 분 : 토지(대지), 행정재산

O 위 치 : 대구 동구 동내동 1112, 1112-1, 1112-2

O 면 적 : 19,868.5m²

【 위치도 및 조감도 】





- O 용 도 : 의료기술시험연수원 건립
- 다. 사용료 추산액: 162,228,592원* 정도

*연간사용료 산출근거 : 공시지가('22년 공시지가 적용) × 부지면적

★ 사용요율(10/1000 / 첨단의료단지법 시행령 제12조 적용)

- 라. 사용기간 : 사용허가 개시일로부터 20년 이내
- 마. 면제 필요성
 - 의료기술시험연수원이 건립되면 국가 보건의료인 자격시험체계를 고도화 할 수 있고, 국내외 보건의료인의 다양한 의료기술 및 첨단 기기를 실습할 수 있는 차별화된 교육환경 제공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우수한 보건의료인력을 양성할 수 있음
 - 또한 대구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 내 의료산업 인프라와 연계하여 국 내외 의료인 연수를 활용한 지역 의료기기 실습과 의료기업의 해외 진출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음
 - O 이와 관련하여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24조 및 동법 시행 령 제17조에 의거 지자체가 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인 의료기술시 험연수원 건립 및 운영 사업자인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에 부지 사용을 허가하고, 사용료를 면제하고자 함.
- 3. 참고사항 : 관련 법령(붙임1) 및 공유재산 사용허가 계획(붙임2)

붙임 1 관련 법령

【 사용허가 】

- □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
- 제18조(국・공유재산의 사용・수익・대부 및 매각 등의 특례)
 -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「국유재산법」・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국・공유재산을 수의계약에 따라 재단 및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에 사용・ 수익하게 하거나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다.
 - ② 제1항에 따라 국·공유재산을 사용·수익하게 하거나 대부하는 경우 그 기간은 「국유재산법」 제27조제1항 및 제36조제1항과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제1항 및 제3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20년의 범위 이내로 할 수 있다. 이 경우 그 기간은 갱신할 수 있으며,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.

【 사용료 면제 】

□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

제24조(사용료의 감면)

-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2조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.
 - 4.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
- □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

제17조(사용료 감면)

- ⑤ 법 제24조제1항제4호에서 "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 에게 일정 기간 사용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"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
 - 2의2.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 또는 공법인의 비영리 사업을 위한 경우

붙임 2

공유재산 사용허가 계획

문서번호	의료산업과-1887	
등록일자	2023. 3. 22.	
결재일자	2023. 3. 22.	
공개구분	비공개(5)	

주무관	의료산업정책 팀장	의료산업과 장	혁신성장실장
박민주	남춘호	서귀용	전결 2023. 3. 22.
협조			

의료기술시험연수원 부지 무상 사용허가 계획

□ 무상 사용허가 개요

O 대상 시유재산

- 구 분 : 토지(대지), 시유재산

- 소재지/면적 : 동구 동내동 1112,1112-1, 1112-2 / 19,868.5㎡

O 대상기관 :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

O 허가기간 : 사용허가일로부터 20년

O 근 거 :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17조(사용료감면) 등

□ 행정사항

○ 공유재산심의회 안건 제출 (회계과): '23. 3월

O 공유재산심의회 의결 후 의회 안건 제출 : '23. 회기중



[의료산업과]

의료기술시험연수원 부지 무상 사용허가 계획

국가 보건의료자격시험체계 고도화 및 보건의료인에 대한 교육훈련 환경 구축을 통한 우수한 보건의료인력 양성을 위해 첨복단지 내 의료기술시험 연수원 건립 부지에 대한 무상 사용허가를 하고자 함

I 추진근거

- O 의료기술시험훈련원 건립부지 매입 계획 (의료산업과-507호 / 2017.1.20.)
- 의료기술시험연수원 건립 통합 추진방안 통보 (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-3966 / 2018.3.15.)
- O 의료기술시험연수원 구축 및 운영 보조사업자 지정 (복지부 공고 / 2021.2.26.)

Ⅱ 관련법령

- 「첨단의료단지법」 제18조(국·공유재산의 사용·수익·대부 및 매각 등의 특례)
- O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제16조(공유재산심의회)
- O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제20조(사용허가)
- O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제24조(사용료의 감면)
- O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」제17조(사용료 감면)
- O「대구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」제5조(심의회의 심의사항)

Ⅲ 재산현황

O 구 분 : 토지(지목 : 대지), 시유재산

○ 소재지 : 동구 동내동 1112, 1112-1, 1112-2

O 면 적: 19,868.5 m²



허가개요 및 검토의견

O 허가대상: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

O 사용기간 : 허가일로부터 20년

(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제2항에 의거)

O 검토의견

- 의료기술시험연수원은 국가 보건의료자격 시험체계 고도화 및 국·내 외 보건의료인에 대한 교육훈련 환경 구축을 통한 우수한 보건의 료인력 양성을 위한 핵심 인프라임
-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에서 구축 및 운영 예정으로 향후 첨복단지 내 의료산업 인프라와 시너지 효과 및 국내·외 의료인 연수를 활용한지역 의료기기 실습과 지역 의료기업의 해외 진출에 기여하기 위해관련절차

(공유재산심의회 심의, 시 의회 동의)를 거쳐 부지에 대한 무상 사용을 허가 하고자 함

\mathbf{V}

행정사항

- 공유재산심의회 안건 제출 (회계과) : '23. 3월
- O 공유재산심의회 의결 후 의회 안건제출 및 동의: '23. 회기중

<붙임> 1. 관련 법령 1부

2. 부지 위치도 및 의료기술시험연수원 건립 개요 1부

붙임1 관련 법령

□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

제18조(국・공유재산의 사용・수익・대부 및 매각 등의 특례)

-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「국유재산법」・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국·공유재산을 수의계약에 따라 재단 및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에 사용·수익하게 하거나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다.
- ② 제1항에 따라 국·공유재산을 사용·수익하게 하거나 대부하는 경우 그 기간은 제36조과 및 제31조에도 불구하고 <u>20년의 범위 이내로 할 수 있다</u>. 이 경우 그 기간은 갱신할 수 있으며,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.
- ③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를 사용・수익하게 하거나 대부하는 경우에는 「국유재산법」제24조제3항 및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13조에도 불구하고 그 토지 위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. 이 경우 그 시설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그 기간이 끝나는 때에 이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거나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.

□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

제16조(공유재산심의회)

-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
 - 5. 제24조 또는 제34조 및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

제20조(사용허가)

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.

제24조(사용료의 감면)

-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<u>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때</u>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2조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.
 - 4.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허가하는 경우 등 <u>대통령령으로</u> 정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

□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

제17조(사용료 감면)

- ⑤ 법 제24조제1항제4호에서 "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"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
 - 2의2. <u>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</u> 또는 공법인의 비영리 사업을 위한 경우

□ 대구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

제5조(심의회의 심의사항)

- ① 심의회의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 - 6. 법 제24조, 제34조 또는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

붙임2 부지 위치도 및 의료기술시험연수원 건립 개요

○ 위치도



○ 건립개요

- ▶ (사업기간) 2016 ~ 2024년
- · (위치/면적) 동구 동내동 1112, 1112-1, 1112-2 / 19,868.5 m²
- · (총사업비) 85,389백만원(국 73,529, 시 11,860)
- ▶ (주요시설) 실기시험센터, 연수센터, 지원시설

